

# 상임심판 운영규정

제 정 2024. 02.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가입된 대한장애인탁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소속의 상임심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경기 운영과 심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등)** ① 상임심판은 “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센터”에 심판등록을 완료한 자 중, 장애인체육회가 정하는 선발절차를 거쳐 승인된 자를 말한다.

② 이 규정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하여 협회에서 선임된 상임심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상임심판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임심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상임심판 선발 심의
2. 성과평가
3. 포상

4.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상임심판 운영에 대해 장애인체육회가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판위원회 위원장, 심판위원회 추천 1명, 장애인체육회 담당부서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인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사무국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동일 대학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 장애인체육회, 협회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⑦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법률 위반이나 징계 등으로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

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⑨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조(선발절차)** ① 협회는 상임심판 선발기준을 준수하여 공개선발 절차를 거쳐 장애인체육회에 추천하고, 제3조 위원회의 심의 및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선임한다.

- ② 협회는 제14조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 평가자를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개채용 절차를 생략하고 선임할 수 있다.

**제5조(자격요건)** ① 상임심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심판 중 선임하며,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 협회 등록 심판 중 국제심판 전 급수 또는 국내심판 1급 자격 소지자(단, 1급 심판이 미개설된 종목의 경우 차순위 등급 소지자)
2. 해당연도에 심판등록을 완료하고, 해당연도 포함 3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 완료한 심판
3. 최근 3년 내 협회 주관 전국규모 대회 5회 이상 참가한 심판(단, 연 1회 이상은 필히 참가, 동계종목의 경우 별도로 정함.)
4. 최근 2년 내 장애인체육회 주관 심판아카데미를 이수한 심판

-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외에 국제심판 또는 국제기술임원 등 경력자로서 심판위원회에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추천한 심판의 경우 선발할 수 있다.

**제6조(임기)** 상임심판의 선임은 1년 단위로 계약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은 상임심판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심판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심판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심판
  -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심판
  -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심판
  -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심판

5.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심판

**제8조(직무)** 상임심판은 장애인체육회 상임심판제도 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판업무: 국내·외 종합대회 및 전국대회 등 장애인체육 종목 대회 심판 참가
2. 교육업무: 장애인체육회(심판위원회) 주관 심판 교육 참가 및 협회 주관 심판 및 선수·지도자·관계자 등 대상 교육 활동
3. 연구업무: 심판양성체계(안) 수립, 과정별 교육커리큘럼 작성 및 교육자료 개발, 국제 규정 번역, 판정(오심)사례 분석 등
4. 조사업무: 심판현황 조사, 교육 관련 기초자료 수집, 타 종목사례 운영사례 조사 등
5. 홍보업무: 국제심판 취득과정 및 일정 안내, 협회 주관 심판양성 교육, 국제규정 개정 사항 홍보 등
6. 관리업무: 해당 종목 심판 관련 규칙, 연구(업무)활동 결과물 등 관리, 활동보고회 등
7. 그 밖에 상임심판제도 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별도로 장애인체육회가 정하는 업무

**제9조(권리 및 의무)** ① 상임심판은 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의 심판으로 우선 배정받는다.

- ② 상임심판은 협회가 주관하는 심판양성교육 및 승급 교육에 주된 강사로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상임심판은 협회의 공정한 심판환경 조성을 위해 심판 참여 및 종목별 심판활동 현황을 확인하고 불공정행위 발생 시, 즉시 심판위원장 및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협회는 상임심판을 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에 의하여 심판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 등)** 상임심판 계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협회는 상임심판 선임 후 별표1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2. 상임심판이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상임심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복무규정 등을 현저히 위반할 경우 협회 심판위원회 심의 및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중 상임심판을 교체할 경우 신규 상임심판의 계약 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복무)** ① 상임심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2. 친절·공정·청렴 의무

3. 품위유지 의무

4. 비밀엄수 의무

5. 직장이탈금지 의무

② 상임심판은 복무사항 및 활동내용 등을 협회에 보고하고, 협회는 매월 상임심판 활동실적보고서를 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임심판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간담회 및 회의 등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상임심판은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심판아카데미 및 인권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제12조(수당지급)** 상임심판 근무일 수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최초수당 지급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하며, 이후 지급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최대 15일 근무일까지 별표2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2. 수당 지급일은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3. 그 밖에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복리후생)** ① 상임심판 활동 수행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비는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임심판의 국제대회 참가 시 국외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성과평가 등)** ① 장애인체육회는 매년 상임심판 활동성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제3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상임심판의 재선임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선임 할 수 없다.

1. 성과평가 결과 3년 연속으로 ‘미흡’으로 판정된 경우

2. 3회 이상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 등으로 장애인체육회 및 협회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③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협회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상임심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현저한 업적이 있거나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협회장과 장애인체육회장은 이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6조(심판활동의 제한)** 상임심판은 장애인체육회의 승인 없이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원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심판으로 활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세부지침) 이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24.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임심판 표준 업무위탁 계약서

**상임심판 업무위탁 표준계약서**

대한장애인탁구협회(이하 "협회"이라 함)과 (성명) (이하 "상임심판"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상임심판 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하게 이행키로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상임심판이 업무용역을 제공하고, 협회는 상임심판의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심판의 용역제공 범위)** ① 상임심판은 본 계약에 따라 협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아래 상임심판 업무용역을 제공한다.

가. 협회가 지정하는 상임심판 업무로서 대회 심판 활동 및 참관, 심판 운영 및 교육 지원, 연구, 교육 및 연수 이수, 일반 심판 교육 및 관리 등 제반 업무

나. 대한장애인체육회 상임심판 주무 부서에서 부여하는 교육 및 과제 수행 업무

② 협회 또는 상임심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협의에 의하여 상임심판의 용역 업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상임심판은 용역 특성상 휴일 또는 야간 활동을 할 경우 정확한 이유 없이 용역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3조(용역기간)** ① 본 계약에 의한 상임심판의 용역제공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이내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은 자동 합의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③ 협회 또는 상임심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표명한 날로부터 최소 1개월간의 시한을 두어야 하나, 제7조 제1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용역업무 수행방법)** 상임심판의 업무 수행시간이나 장소는 협회 사정을 고려하여 상임심판과 사전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5조(수당)** ① 제2조에 대한 수당은 월별 활동일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

가. 내용: 월별 활동일 수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

나. 수당 지급일: 활동 익월 5일(휴일인 경우 전일)

다. 지급 개월: 11개월

라. 수당 지급 기준

월 활동 일수	수당 지급액(원)	비고
15일 이상	3,000,000	세전
7 ~ 14일	175,000 × (근무일수)	"
1 ~ 6일	150,000 × (근무일수)	"

② 협회는 제1항의 수당 이외에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협회에서 실시하는 대회, 강습회 등 기타 활동에 관한 숙박비 및 식비는 지급해야 하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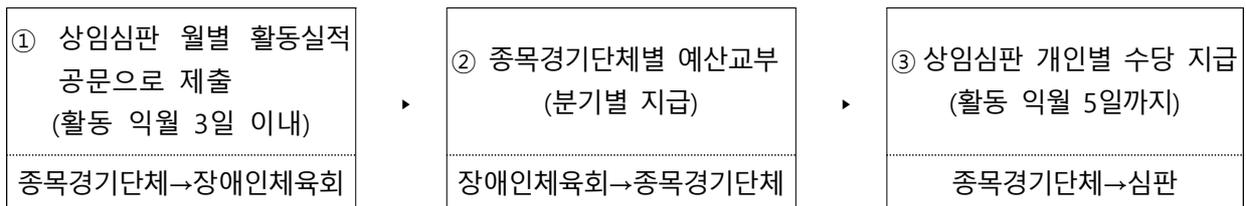
③ 상임심판은 활동 인정을 받기 위해 협회를 통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월별 활동실적을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가. 방 법: 20 년 상임심판 월별 활동실적 제출양식(붙임) 작성, 각 활동에 대한 근거자료 첨부

나. 기 한: 상임심판 활동 익월 3일 이내

다. 참 고: 상임심판 활동 실적 인정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협회의 사전 승인

**제6조(지급방법 등)** ① 제5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다.



② 협회는 제5조의 수당을 매월 5일에 상임심판의 지정계좌에 입금한다.

③ 상임심판은 제5조의 수당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며, 협회는 동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을 전항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키로 한다.

④ 전 항의 제세공과금은 사업소득세(주민세 포함)를 포함하며,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상임심판이 지역가입자로서 별도로 가입하기로 한다.

⑤ 상임심판은 보수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신고 의무를 본인의 명의로 계산으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해지)** ①협회는 상임심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중 상임심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2. 불공정한 심판판정으로 협회 심판위원회에서 제재조치가 결정된 경우

3. 본 계약의 협의 사항을 성실히 응하지 않는 등 신의성실에 현저히 반하게 용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4. 협회 및 체육 유관단체에서 스포츠불공정, (성)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
  5. 당해 단체 규약, 규정 등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6.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중 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8. 상임심판 활동 중 해당 종목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9. 당해 연도 해당 종목에 심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
- ② 상임심판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협회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며, 이를 해지하여 발생하는 물품 결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 상임심판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③ 협회는 상임심판에게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기로 하며, 제5조의 용역대가의 지급은 당해 사유 발생일까지 지급액으로 종결하고 잔여기간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않으며, 용역 대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잔여 용역 수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협의하여 정한다.
  - ④ 협회는 상임심판이 연간 활동일 수 기준 미달, 심판 활동 저조 등 상임심판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차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 ⑤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상대방의 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8조(비밀의 유지)** ① 협회와 상임심판은 본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협회와 상임심판은 계약기간 만료,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후에도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제9조(손해배상)** 상임심판의 귀책사유로 협회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협회는 상임심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전에 관한 사항)** ① 협회는 상임심판의 안전한 업무용역 수행을 위해서 각 대회별 기간 동안에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상임심판은 관련법령 및 협회가 정한 제반 안전 교육 사항 및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임심판이 이를 위반하거나 부주의, 과실로 인한 재해의 책임은 상임심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협회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별표 2] 수당지급 기준

**상임심판 수당지급 기준**

월 활동 일수	수당 지급액(원)	비고
15일 이상	3,000,000	세전
7 ~ 14일	175,000 × (근무일수)	"
1 ~ 6일	150,000 × (근무일수)	"